



노동부
Ministry of Labor

▶ 2009. 8. 11(화) 배포
▶ 총 2쪽 (사진 없음)

보도자료

▶인적자원개발과장 시민석
▶인적자원개발과 서기관 정진우
TEL : 02-2110-7267
E-MAIL : jjjw35@molab.go.kr
FAX : 02-503-9538

<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>

사업주대상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폭 확대된다

- 오는 10월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.
 -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,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
 - 지원하고 있는 훈련 형태는 한자리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집체훈련, 현장에서 실제 직무수행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현장훈련, 원격훈련, 혼합훈련(현장훈련과 집체훈련을 결합한 훈련)등 다양하다
 - * 인터넷원격훈련(이러닝) : 정보통신매체(인터넷)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웹상으로 훈련생 관리가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
 - ** 우편원격훈련 :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로 훈련이 실시되고 웹상으로 훈련생 관리가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
- 노동부는 그동안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또는 원격훈련과 현장훈련 형태의 '혼합훈련'만 지원하였으나, 10월부터는 집체훈련, 현장훈련, 원격훈련(인터넷/우편) 중 2개 이상을 혼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. (전체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이며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8시간)

- 특히 짧은 시간으로 이뤄진 이러닝 콘텐츠 2개 이상을 합쳐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져 앞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훈련과정이 공급될 것이며,
 - ※ 예시 : A콘텐츠 4시간 + B콘텐츠 8시간 + C콘텐츠 4시간
- 상대적으로 원격훈련과정이 적었던 생산기술 분야 등에 대해 우대 지원*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 - ※ 인터넷원격훈련과정(16시간) : 공급부족분야(42,500원), 공급충분분야(34,900원)/7,600원(17.9%) 차이
- 아울러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시설·장비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신규 훈련기관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.
 - 따라서 원격훈련에 대한 사양 중심의 시설·장비요건을 훈련 관리에 필요한 기능 중심 요건으로 개편하여 IT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고 직업훈련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며,
 - 원격훈련의 훈련 교사 및 강사 요건도 대폭 완화 (훈련생 150명당 1명 → 500명당 1명) 시켜 상용직 채용을 유도하게 되면 훈련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 원격훈련과정에 대한 심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,
 - 심사위원을 현업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 및 현장성을 높이고, 현행 1단계 심사를 2단계 심사로 강화하여 부적격 과정을 심사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하고,
 - 훈련과정을 훈련시장에서의 공급 정도, 훈련내용·방법의 적정성 수준에 따라 심사등급(3등급)을 부여하고 심사등급에 따라 훈련비용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

구 분	공급 부족	공급 충분
고급 과정	A등급	B등급
일반 과정	B등급	C등급

※ 비용지원 : 16시간 훈련을 기준, A(53,100원), B(42,500원), C(34,900원)

- 노동부는 8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「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(고시)」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
- 노동부의 임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『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회사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』이라면서 『사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의 직업훈련제도를 활용한다면 노사 윈-윈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』이라고 강조했다

<참고>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개요

<참 고>

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,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훈련비, 숙식비 등 수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실시를 촉진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

□ 사업 개요

- 재원 :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
- 지원대상 :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주
- 지원방법
 - 자체훈련 : 노동관서로부터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후,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직접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노동관서에 신청
 - 위탁훈련 : 노동관서로부터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·실시하고 훈련비용을 노동관서에 신청

□ 지원대상 훈련과정

- 집체훈련, 원격훈련(인터넷/우편), 현장훈련 및 혼합훈련으로서 2일 16시간(우선지원대상기업은 8시간) 이상인 훈련과정

□ 지원내용

- 훈련비 :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80%(우선지원대상기업 100%)
 - ※ 원격훈련과정은 심시등급별 지원한도에서 실훈련비의 80%(우선지원대상기업 100%)
- 인건비 : 1개월 이상(우선지원대상기업 7일)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100%(우선지원대상기업 150%)
- 숙식비 : 1월 212,500원